#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82 발의연월일: 2025. 5. 7.

발 의 자: 박수민·김선교·성일종

이종욱 • 박덕흠 • 박정훈

김민전 · 정연욱 · 박준태

임종득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 사전투표제는 2014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선거 부실 관리 문제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날짜의 차이로 인해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투표제도의 개선을 위해,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여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기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관리가 어려운 관외 사전투표를 없애 선거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간의 시차를 줄여 보다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재자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보다 명확한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하고,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제155조제1항 등).
- 나.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 1)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 2)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 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안 제44조의2).
  - 4)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 5)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신설).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 사전투표일(선 거일 전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부재자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부재자투표 사유
-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 3. 주소. 거소
- ③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제37조제6항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 ⑥ 부재자투표신고서의 서식,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부재자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조 제4항제1호·제4호 및 제5호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選擧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선거인 명부의"를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 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하나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통합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각각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選舉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 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 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를 "제37조의2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부재자투표신 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選擧人名簿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선거인명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58조의2제2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을 "사전투표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선거일이"를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이"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

다.

제65조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6호·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참 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중 "선거일"을 "사전투표일"로 한다.

제148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군부대 밀집지역"을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사무원"을 각각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하

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중 "선거일"을 "사전투표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사전투표자수"를 "부재자투표신고인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에서"를 "부재자투표소에서"로, "사전투표관리관이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55조제1항 본문 중 "選擧日"을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함"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 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 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부재자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하고 부재자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부 재자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5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4항 단서"로 한다.

- ③ 부재자투표자는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57조제2항 중 "選擧日에"를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로 한다.

제158조의 제목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를"을 "부재자투표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마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마감"으로, "또는 사전투표기간"을 "또는 부재자투표가간"으로, "사전투표가간"을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사전투표자수"를 "부재자투표자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함"을 각각 "부재자투표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전투표절차"를 "부재자투표절차"로 한다.

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제161조제2항 중 "선거일"을 "사전투표일"로 한다.

제162조의 제목 "(사전투표참관)"을 "(부재자투표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투표소별"을 "부재자투표소별"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 참관인"으로,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소에서"를 "부재자투표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를 "부재자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소마다"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소마다"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를 "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 서"로 한다.

제163조제4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64조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사무워"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66조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사전투표소 안에서"를 "부재자투표소 안에서"로 한다.

제166조의2제2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70조제1항 중 "投票가 끝난 후"를 "선거일에 투표가 끝난 후"로 한다.

제171조 중 "投票가 끝난 후"를 "선거일에 투표가 끝난 후"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사전투표"를 각각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사전투표함"을 각각 "부재자투표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 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212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213조제3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215조제1항 단서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한다.

제218조의4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한다.

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부재자투표 및 거소투표"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9조제2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61조제8항제2호바목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개 정 행 아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 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 -----부재자 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 투표기간, 사전투표일(선거일 전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 게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투 표참관인 · 사전투표참관인과 -----부재자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 한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 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 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2조(선거관리) ① 中央選擧管 7 理委員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 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事務를 統轄・관리하며. 하 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 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 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 투표관리관의 違法・부당한 처 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12조(선거관리) ①	
부재자투표관리관	

## (2) ~ (4)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 ① 선 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투표 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ㆍ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제 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

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부재자투표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 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 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부재자투표 사유
-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 3. 주소, 거소
- ③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후 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인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한다.
- ④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 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 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저 (생 략)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

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	<u>할</u>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7조제6항은 부재자투	<u> </u>
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u>준</u>
용한다.	
⑥ 부재자투표신고서의 서	식,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서	식,
부재자투표 사유의 확인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ㅡ 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 ①
(현행과 같음)	
②	
<u></u> 부재자투표소	

우를 포함한다]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후단을 준용한다.

- 1. 2. (생략)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u>사전투표소</u> 및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2. · 3. (생략)
- 4. <u>사전투표소</u> 및 투표소에 가 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1
<u></u> 부재자투표소
2. · 3. (현행과 같음)
4. <u>부재자투표소</u>

- 5. <u>사전투표소</u> 및 투표소를 설 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 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5의2.·6. (생 략)
- ⑤ ~ ⑧ (생 략)
-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 ① 選擧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 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監督한다.
  - ② ~ ⑨ (생 략)
-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u>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u>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②・③ (생 략)
- 제44조의2(<u>통합선거인명부</u>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u>사전</u>
  <u>투표소</u>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
  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

5. <u>무재자투표소</u>	
5의2.・6.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	1
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신고	<u>인</u>
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	<u>인</u>
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
<u>서 같다)</u>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1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	-3
,, <u>                                    </u>	뜅
부의 작성) ①부	
<u>부</u> 의 작성) ① <u>부</u> 자투표소	

사본을 이용하여 <u>하나의 선거인</u> 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u>통합</u>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③ <u>통합선거인명부</u>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148조제1항에 따른 <u>사</u> 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 적 조치를 한 선거인명부를 출 력한 다음 해당 읍・면・동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함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 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 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 으로 본다.

⑤ (생략)

<u>하나의 부재자</u>
투표신고인명부(이하 "통합부재
자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
② <u>통합</u>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③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4
~ 재자투표기간
•
 ⓒ (처체회 가야)
⑤ (현행과 같음)

⑥ <u>통합선거인명부</u> 의 작성,	선
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
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
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第45條(名簿의 再作成) ① 천재지 변, 그 밖의 事故로 인하여 選 擧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고 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가 멸실·훼손된 경 우 選擧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다시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6항에 따 라 송부한 거소·선상투표신고 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구· 시·군의 장은 候補者[비례대 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 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 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

	6 <u>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u> -
第	- 45條(名簿의 再作成) ①
	선
	그 거인명부(부재자투표신고인명
	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
	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u>같다)</u>
	<u>제37조의2제4항 및</u>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부
	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ㆍ
	선상투표신고인명부
	② (현행과 같음)
제	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選擧連絡所長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選擧人名簿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候補者別로 1通씩 24시간 이내에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 략)

-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 지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u>사전투표소</u>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3. · 4. (생 략)
-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지선거기간개시일부터 <u>선거일</u>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
	-
	-
	-
	-
<u>선거인명부,</u> 부자	<u> </u>
자투표신고인명부 또는 거소・	_
선상투표신고인명부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
	-
,,	-
	-
	-
1. (현행과 같음)	
2. <u>부재자투표소</u>	-
3. · 4. (현행과 같음)	
제59조(선거운동기간)	
사전투표	=
<u>일</u>	
	-
	-

- 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
   ·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
   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
   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
   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생 략)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 략)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 · 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 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산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

·.
1. ~ 3. (현행과 같음)
4. <u>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이</u>
5.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현행과 같음)
②
<u>부</u>
재자투표참관인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 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 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 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5조(선거공보) ① ~ ④ (생략)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 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 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 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 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 · 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 일까지 소속 군인 · 경찰공무원 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5조(선거공보)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u>부재자투표소</u>
•

- ⑥ ~ ⑭ (생 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저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1. ~ 5. (생략)
  - 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 에 따른 <u>사전투표참관인</u>의 手 當과 식비
  - 7. (생략)
  -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 관인 및 <u>사전투표참관인</u> 수당 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 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u>사전투표참관인</u> 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 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 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 에게만 지급한다.
  - ⑤ (생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세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5. (현행과 같음)
6
<u></u> 부재자투표참관인
7. (현행과 같음)
<b>4</b>
<u>부재자투표참관인</u>
<u>ତ୍</u> ପ୍ର
⑤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u>사전</u> 저 <u>투표관리관</u>) ①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② 투표관리관 및 <u>사전투표관</u>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 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 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 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 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u>사</u> 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 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 에 따라야 한다.
- ④ 투표관리관 및 <u>사전투표관</u> 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읍· 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u>선거</u> 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ll 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u>부재</u>
자투표관리관) ①
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
관리관
② <u></u> 부재자투표
관리관
부재자투표관리관
③
<u>부</u>
재자투표관리관
<u> </u>
<u>관리관</u>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사전투표
잌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 야 한다.

#### ② ~ ① (생 략)

-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읍·면·동 관할구역에 <u>군부</u> <u>대 밀집지역</u> 등이 있는 경우 2.·3. (생 략)
  -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u>사전투표소</u>를 추가로 설 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 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1항에 따라 <u>사전투표소</u>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 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 ·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 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 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u>사</u> 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u>사전</u>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사전투표사무원</u>을 두어야 한다.
- ④ <u>사전투표소</u>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u>사전투표</u> <u>사무원</u>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u>사전</u> <u>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u>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u>사전투표소</u>의 설치·공고· 통보 및 <u>사전투표사무원</u>의 위 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③ <u>사전투표소</u>의 투표함(이하 "<u>사전투표함</u>"이라 한다)과 郵便 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 는 예상 <u>사전투표자수</u> 및 거소

⑥ <u>부재자투표소</u>
부재자투표사무원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
성) ①
<u>사전투표일</u>
,
② (현행과 같음)
③ <u>부재자투표소</u>
부재자투표함
부재자투표신고인수
1/11/11 4 6 4 6 1

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 수를 감안하여 당해 區·市· 郡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한다.

### ④·⑤ (생 략)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형태로 표시하여야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 ⑦ ~ ⑨ (생 략)

第155條(投票時間) ① 投票所는 第 選舉日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 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 할 때에 投票所에서 投票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選擧人

· ④·⑤ (현행과 같음)
6
<b>(</b> )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
•
,
⑦ ~ ⑨ (현행과 같음)
第155條(投票時間) ①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에게는 番號票를 부여하여 投 票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 ② <u>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u>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u>사전투표소</u>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있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은 <u>사전투표소</u>에 이를 準用한다.
- ③ (생략)
- ④ 사전투표소에서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記票所內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查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가시시각까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 ⑤ <u>사전투표</u>·거소투표 및 선 상투표는 選舉日 오후 6시(보

②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
기간
부재자투표
<u>소</u>
,
<u>부재자투표소</u>
 ③ (현행과 같음)
④ <u>부재자투표소</u>
관은 부재자투표함
<u></u> 부재자투표
참관인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
자투표참관인
  ⑤ <u>부재자투표</u>

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 A)かる 管轄區·市·郡選擧管 理委員會에 도착되어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 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 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 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 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 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 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 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장과 미리 협의하여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여부, 격리자등 의 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7)・(8) (생 략)

-----부재자투표소(제148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하고 부재 자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부재 자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⑦·⑧ (현행과 같음) 第156條(投票의 제한) ①・②(생 | 第156條(投票의 제한) ①・②(현 략)

<신 설>

③ (생략) <신 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소투 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 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 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거소투 표자의 명단과 대조 ·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 을 적어야 한다.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차) ① (생략)

쥀	과	같음)
~~	9-1	$\mathcal{T} = \mathcal{T} \mathcal{T}$

- ③ 부재자투표자는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 다. 다만, 부재자투표기간에 투 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 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 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 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 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 자투표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 표자의 명단과 대조 ·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 을 적어야 한다.

<u>(6)</u>	<u>제4항</u>	<u>단서</u> -	 	_
			 	_

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투표관리관은 選擧日에 選擧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에는 私印捺印欄에 私印을 捺印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枚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私印을 미리 捺印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③ ~ ⑧ (생 략)
-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 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 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 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 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 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_				_	
	2			<u>入</u>	<u> </u>	표일
	<u>및 선</u>	<u> 건거일</u>	<u>에</u>			
		8 (				
ᅦ	158조	<u>(</u> 부재	자투표	<u>E)</u> ①	부재.	자투
	표신 :	교인명	부에	있는	선거	인은
	<u>부재</u> 기	아투표	기간	중에	부재.	<u>자투</u>
	표소이	에 가스	를 투3	포할 수	수 있다	<u> </u>
	② <u>1</u>	부재자	투표들	를		
	_	· 아투표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③ <u>사전투표관리관은</u>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u>사전투표관리관"</u>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 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 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u>사전투표관리관</u>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b>.</b>
③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관"
4
<u></u> 부재자투표
<u>한</u>
⑤
<u>부재자투표관리관</u>
⑥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

- 기간 중 매일의 <u>사전투표마감</u> 후 <u>또는 사전투표기간</u>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u>사전투표참관인</u>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 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 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 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 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 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 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 유를 기재한다.
-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u>사전투표함</u>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

<u>투</u>	표기간부재자투표마감
	또는 부재자투표기간
<u>부</u>	-재자투표참관인
1.	
	<u>부</u> 재자투표함 <u>부</u>
	재자투표자수
	부재자투표관리관
	무재자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관리관
	 부재자투표참관인
2.	· 
	부재자투표함

- 우 <u>사전투표함</u>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생 략)
-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u>사전투표절차</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위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61條(投票參觀) ① (생 략)

- ②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 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 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 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 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 ③ ~ ⑭ (생 략)
-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 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 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 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

<u>무재자두표함</u>
<ul><li>⑧부재자투표절차</li></ul>
· 第161條(投票參觀) ① (현행과 같
음)
②
<u>사전투표일</u>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 ① 부재
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
<u>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u>
②

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 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 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 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 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 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 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 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 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 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u>사전투표참관</u>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候補者

<u>부재자투표소별</u> <u>부재</u>
자투표참관인
<u>부재자투표기간</u> 부재자투
표소에서
③ 부재자투표참관인은 부재자
<u> 투표소마다</u>
<u></u> 부재자
<u>투표참관인</u>
④
관인

가 선정한 <u>사전투표참관인</u>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가 選擧權者중에 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人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u>사전</u>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 ⑤ <u>사전투표참관</u>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u>사전투표참관인</u>"으로 본다.
- ⑥ <u>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u>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第

- ① ~ ③ (생 략)
- ④ <u>사전투표소</u>(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 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第

부재자투표참관인-
<u></u> 부재
자투표참관인
⑤ 부재자투표참관
<u></u> 부재자
투표관리관
6 <u>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u>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부재자투표소</u>
<u>.</u>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 ① ~ ③ (생 략)
- ④ <u>사전투표소</u>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u>사전투표관리</u> 관"으로, "투표사무원"은 "<u>사전</u> 투표사무원"으로 본다.
-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 ① (생 략)
  - ② <u>사전투표소</u>(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 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第166條(投票所內外에서의 騒亂 言動禁止 등) ① ~ ④ (생 략)
  - 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 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 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은 "<u>사전투표관리관</u>"으로, "투 표사무원"은 "<u>사전투표사무원"</u> 으로, "선거일에"는 "<u>사전투표</u> 소 안에서"로 본다.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부재자투표소</u>
<u>부</u> 재자투표관
<u>리관부재</u>
자투표사무원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 ① (현행과 같음)
② <u>부재자투표소</u>
第166條(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
言動禁止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부재자투표소</u>
<u></u> 부재자투표관리관
<u></u> 부재자투표
<u>소 안에서</u>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

위 금지) ① (생 략)

- ② 투표관리관 또는 <u>사전투표</u> 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 第170條(投票函 등의 송부) ① 투표관리관은 <u>投票가 끝난 후</u> 지체없이 投票函 및 그 열쇠와 投票錄 및 殘餘投票用紙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第171條(投票關係書類의 引繼) 투 표관리관은 <u>投票가 끝난 후</u> 選 舉人名簿 기타 選舉에 관한 모 든 書類를 管轄區·市·郡選舉 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引繼하 여야 한다.
- 제176조(<u>사전투표</u>·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區 ·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郵 便으로 송부된 <u>사전투표</u>·거소 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 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

위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표관리관	-
	_
	_
	-
第170條(投票函 등의 송부) ①	
<u>선거일에</u> 투표기	<u>-</u>
<u>끝난 후</u>	-
	-
	-
② (현행과 같음)	
第171條(投票關係書類의 引繼)	-
선거일에 투표기	-
 끝난 후	_
	_
제176조( <u>부재자투표</u>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
<u></u> 부재자투표	-
	-

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 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보관하여야 한다.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u>사전투표함을</u>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u>사전투표함</u>은 開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擧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開票所로 옮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

②
부재자투표함
③
<u></u> 부재자투표함-

## <신 설>

⑤ (생략)

제179조(무효투표) ① (생 략)

- ② <u>사전투표</u> 및 거소투표의 경 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投票도 이를 無效 로 한다.
- 1. 2. (생략)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 1. ~ 9. (생략)
- 10. <u>사전투표소</u>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 제212조(거소투표·<u>사전투표</u>의 제212조(거소투표·<u>부재자투표</u>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 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한 특례) -----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u> </u>
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트	Ē
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기	4
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기	<u>۲]</u>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179조(무효투표) ① (현행과 경	앝
<u>수</u> )	
② <u>부재자투표</u>	_
	_
	_
	_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_
	_
·.	
1. ~ 9. (현행과 같음)	
10. <u>부재자투표소</u>	_
	-
	-
]212조(거소투표 • <u>부재자투표</u> 9	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 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1. (생 략)

- 2. <u>사전투표소</u>에서 투표한 선거 인의 투표지 회송
-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② (생략)
  - ③ 동시선거에서 <u>사전투표참관</u> 인은 제162조제2항에 따른 선 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당 해 選擧에 참여한 政黨마다 2 人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을 선 정·申告하여야 한다.
  - ④ 同時選擧에 있어서 <u>사전투</u> 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 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를 우 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무 소속후보자가 선정·申告한 者 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抽 籤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1. (현행과 같음)
2. <u>부재자투표소</u>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② (현행
과 같음)
③부재자투표참관
<u>인</u>
<u></u>
,
④ <u></u> 부재자투
표참관인

政黨이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政黨順位의 앞順位의 政黨 이 선정・申告한 者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第215條(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 ① 同時選擧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開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 · 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 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 무소속후보자는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거소투 표・선상투표 및 <u>사전투표</u>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政黨은 4人씩을, 무소속후보 자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

② (생략)

 第215條(開票參觀人	 등에	과하
	- <u>부재자</u>	<u>투표</u> -
② (현행과 같음)	ار الحال	7) ①
제218조의4(국외부재 		<u>1</u> ) ( <u>1</u> )

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 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 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 관리 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 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 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 다) 서면 · 전자우편 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 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 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 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2. (생략)
- ② ~ ⑤ (생 략)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저 대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 항제7호·제10호는 제외한다)

<u>.</u>
1. <u>부재자투표기간</u>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세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를 준용한다. 이 경우 "<u>사전투</u> 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 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 ②·③ (생 략)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 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 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 的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 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 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 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
<u>투표 및 거소투표</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u>.</u>
1

---- 부 재 자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연 설원(제79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연설 · 대담을 하는 사람 과 제81조제1항 · 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 에 따라 대담 · 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 참관인 · 사전투표참관인과 개 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선장 · 입회인 에게 金錢・物品・車馬・饗應 그 밖에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 2. ~ 7.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

<u>부재자투표참관인</u>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관

한다)이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 役에 處한다.

## ⑥ ~ ⑧ (생 략)

-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투표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사람 또는투표소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권유하거나투표를 공개하는등투표 또는개표에 영향을미치는행위를한사람
  - 2. (생략)
  - ②・③ (생략)

第244條(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第244條(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u></u>
방해죄) ①  1	
<u> </u>	
	 -
2. (현행과 같음)②・③ (현행과 같음)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 원, 공정선거지원단원 ·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 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 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 票所・開票所 또는 선거관리위 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 를 騷擾・교란하거나, 投票用紙 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 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 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 서류 · 인장 또는 선거인명부 (거소 ·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 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 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 다.

② (생략)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부재자투표사무원		
<u> </u>		
② (현행과 같음)		

第248條(詐偽投票罪) ① (생 략)	第248條(詐偽投票罪) ① (현행과
	같음)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	2
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 <u>사전투표</u>	<u></u> 부재자투표
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	사무원
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	
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u></u>
第249條(投票偽造 또는 增減罪)	第249條(投票偽造 또는 增減罪)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	2
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 <u>사전투표</u>	<u></u> 부재자투표
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	사무원
 한다)이나 從事員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3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	
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⑦ (생 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8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	
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u>.</u>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마. (생 략)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 3항 또는 제174조(개표사 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투표사무원·<u>사전투표</u> <u>사무원</u> 또는 개표사무원으 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 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 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의2. ~ 6. (생 략)

⑨ ~ ⑫ (생 략)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항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 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 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 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 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 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

2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 망에 대한 보상) ①
<u>부재자</u> 투표관리관

급하여야 한다.	<u></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